

07

원산지 관리, 현장의 목소리

섬유의류산업 FTA 활용률 분석과 FTA 수출활용 제고방안





섬유의류산업 FTA 활용률 분석과 FTA 수출활용 제고방안



주성호

한국섬유산업연합회 국제통상실장

1. 들어가는 말

한국 섬유의류 수출은 지속 증가세에서 2015년을 기점으로 하락세를 지속 중이며, 최근 2022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섬유의류산업의 수출액은 전반적인 하향세가 뚜렷한 상황이다.

섬유의류 수출 감소원인은 중국, 인도, 동남아 등 개도국 대비 인건비 열위 및 생산 인력부족 등 국내 생산여건의 문제와 더불어 글로벌 패션 브랜드를 기반으로 고부가가치 역량을 보유한 이탈리아, 프랑스 등과 달리 우리기업들은 주문자생산방식(OEM)방식의 글로벌 해외 생산기지 진출과 현지화에 주력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미-중 갈등과 프렌드 쇼어링(friend-shoring) 등 공급망 재편 등에 따라 우리 섬유의류산업은 새로운 공급망을 모색하면서 메가 FTA인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활용과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및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등 신통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아래에서는 우리 섬유의류산업의 FTA 활용 수출현황과 활용애로를 분석하고, FTA 활용기업에 대한 조언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시사점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표 1 한국의 섬유의류 주요 수출대상국(2022~2023)

(단위 : 백만불, %)

No	국가명	2022년			2023년		
		금액	증감률	비중	금액	증감률	비중
	전체	12,301	△4.0	100.0	10,915	△11.3	100.0
1	베트남	2,503	△4.0	20.3	2,203	△12.0	20.2
2	중국	1,548	△11.5	12.6	1,482	△4.3	13.6
3	미국	1,675	△1.0	13.6	1,440	△14.1	13.2
4	인도네시아	815	△6.1	6.6	656	△19.5	6.0
5	일본	637	△13.2	5.2	578	△9.1	5.3
6	튀르키예	451	9.5	3.7	376	△16.7	3.4
7	홍콩	289	△3.7	2.3	254	△12.3	2.3
8	인도	231	0	1.9	210	△9.1	1.9
9	이탈리아	207	13.2	1.7	193	△6.8	1.8
10	아랍에미레이트	162	29.7	1.3	184	13.6	1.7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MTI코드 4 기준)



2.

낮은 편이 아닌 섬유의류 FTA 수출 활용률

우리 관세청 발표 기준, 2024년 2분기 우리 섬유의류산업의 FTA 수출활용률은 57.5%로 전업종 평균 85.7%에 비해 매우 저조한 상황이며, 섬유의류 수입활용률은 85.4%(전업종 평균은 84.4%)에 달하는 상황을 볼 때, 수출과 수입활용률은 불균형이 매우 심한 편이다.

그러나, 한국섬유산업연합회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실질적인 섬유의류의 FTA 수출활용률은 결코 낮은 편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수출활용률¹⁾은 FTA 특혜대상액 대비 FTA 실제 적용액의 비율로 분석기준년도인 2022년도 섬유의류산업의 평균 수출활용률(48.2%)을 FTA 체결국별로 분석할 경우, 국별, 품목별 격차가 존재한다.

섬유의류의 경우, 미국, 캐나다, EU, 튀르키예 등 원산지 증명서 자율발급 및 내수 시장이 큰 국가로의 FTA 수출활용률은 대체로 높은 편인 반면, 아세안, 중국 및 남미 등 임가공 섬유의류 투자가 발달하거나 내수시장이 협소한 FTA파트너로의 수출활용률은 낮은 상황이다.

표 2 협정별 FTA 수출활용률(2022년 1분기~2022년 4분기)

(단위 : %)

협정 (수출국)	2022.1/4			2022.2/4			2022.3/4			2022.4/4		
	월 데이터	전분기 대비 증감	증감률									
아세안	55.6	3.6	6.9	56.2	0.6	1.1	57.2	1.0	1.8	58.1	0.9	1.6
인도	76.6	-1.2	-1.5	77.6	1.0	1.3	79.0	1.4	1.8	79.5	0.5	0.6
EU	87.0	-0.7	-0.8	86.5	-0.5	-0.6	86.9	0.4	0.5	87	0.1	0.1
미국	83.7	-1.4	-1.6	84.2	0.5	0.6	85.1	0.9	1.1	85.9	0.8	0.9
튀르 키예	80.3	-1.5	-1.8	77.1	-3.2	-4.0	75.7	-1.4	-1.8	75.5	-0.2	-0.3
호주	81.0	0.9	1.1	81.1	0.1	0.1	81.4	0.3	0.4	81.8	0.4	0.5

1) 수출활용률(%) = $\frac{\text{FTA 적용금액(USD)}}{\text{FTA 특혜대상금액(USD)}} \times 100$

협정 (수출국)	2022.1/4			2022.2/4			2022.3/4			2022.4/4		
	원 데일터	전분기 대비 증감	증감률	원 데일터	전분기 대비 증감	증감률	원 데일터	전분기 대비 증감	증감률	원 데일터	전분기 대비 증감	증감률
캐나다	89.4	-5.9	-6.2	94.5	5.1	5.7	94.3	-0.2	-0.2	94.6	0.3	0.3
중국	59.4	-5.3	-8.2	59.8	0.4	0.7	62.1	2.3	3.8	63.3	1.2	1.9
베트남	59.1	10.7	22.1	54.4	-4.7	-8.0	53.3	-1.1	-2.0	54.0	0.7	1.3
콜롬비아	45.1	-7.7	-14.6	41.8	-3.3	-7.3	46.8	5.0	12	49.1	2.3	4.9

자료 : 관세청



베트남은 우리 섬유의류기업들의 현지 투자가 가장 활발한 나라 이자 우리 섬유의류 수출대상국 1위국으로 가장 중요한 섬유 통상 파트너국 중의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FTA 수출활용률은 60% 미만이며, 특히 우리가 개별 품목별로 연간 1~2억불 이상 수출하는 주력 품목들의 활용률은 10~30% 수준인 상황이다.

예를 들어, 제직(weaving), 편직(knitting) 공정과 염색(dyeing), 기능성 가공(functional processing) 등 우리나라가 글로벌 소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폴리우레탄 도포 직물'(HS 5903.20)의 경우 연간 베트남으로 2억4천만불을 수출하고 있지만, FTA 활용률은 36%이며, 우리나라가 훌륭한 제조기반을 보유한 '탄성사 5% 이상 함유 편직 물'(HS 6004.10) 1개 품목으로 2억 2천만불을 베트남에 수출하고 있는 것에 비해, 수출활용률은 13%에 지나지 않는다.

상기 품목에 대한 한-베 FTA 원산지 기준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 또는 역내 부가가치(RVC) 40% 이상으로 충족이 쉬운 편이며, 해당 품목에 대한 베트남 수입 관세율은 12%로 일반 수출조건 보다 FTA 마진이 훨씬 큼에도 불구하고, 상기 품목들에 대한 아세안과 중국에 수출되는 낮은 활용률을 보이고 있다.

수출활용률 저조의 가장 큰 원인은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들이 파트너국의 내수가 아닌 현지 임가공 및 제3국 수출용으로 현지 수입되기 때문이다. 베트남의 경우 수출 자유지역 및 내국수출입제도(In-country export & import) 등 수출용 원부자재 수입에 대한 관세, 부가세 감면제도가 가장 발달한 국가이고, 중국 역시 수출용 원부자재에 대한 세관의 수책(手柵) 제도 등이 잘 발달해 있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서는 섬유의류 품목 상당수가 임가공 및 현지 보세구역으로 수출되는 구조를 고려 시, 섬유의류산업의 실질적인 FTA 활용률은 전업종 평균(약 75%)과 유사하거나 이를 웃도는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2024년 2분기 현재, 한·미 FTA 수출 활용률은 76.2%, EU 90.2%, 튀르키예 93.3% 등 주요시장 활용률이 업종 평균 또는 평균 이상인 것을 볼 때, 우리 섬유의류는 FTA를 수출에 잘 활용하고 있는 업종이라고 재해석할 수 있다.

3. **섬유의류기업 FTA 수출애로 요인**

국내 섬유의류산업의 90% 이상은 중소기업이 차지하며, 우리가 입는 브랜드 의류 가치사슬의 상당부분은 중소 섬유 제조기업들과 다양한 에이전트 기업들이 복잡한 거래관계를 통해 생산, 유통되고 있다.

수출 공급망 역시 실 → 원단 → 의류 생산과정에서 다양한 중소기업들이 기획, 제조, 가공, 품질관리 등에서 역할을 분담하고 있기 때문에 미주, 유럽 등 주요 수출시장 바이어의 FTA 요구를 맞추기가 쉬운 일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FTA 특혜세율과 일반 관세율의 차이가 크지 않거나 수출 마진에 비해 FTA조건으로 인한 관리비용이 높을 경우 FTA활용을 기피하기 마련이다.

FTA 관리비용은 원산지 기준 충족을 위한 역내산 재료 및 공정 요구수준과 협력생산처의 증빙협조와 비례하는데, 섬유패션제품은 일반적으로 유행성과 시즌성이 강하기 때문에 생산모델이 다양하고 단납기 상품일수록 FTA활용성은 제한될 수 밖에 없다.

완성 의류 기준으로 한·미 FTA 등 미주권 국가들과의 FTA 원산지 기준은 대체로 실(yarn) → 원단(fabric) → 의류에 이르는 공정의 역내 수행을 요구하는 이른바, 원사기준(yarn-forward)이 적용되고 있고, 편직물(knitted fabric)의 경우, 한·미 FTA는 실의 원료인 화이버(fiber)부터 역내 생산을 요구하는 화이버기준(fiber-forward)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러한 원산지 기준은 기업의 활용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

유럽연합(EU)은 미국과 달리 역내 면화산업 기반이 없고, 이태리, 프랑스 등을 중심으로 프리미엄 원단(fabric)생산 및 역내 봉제기반을 연계하여 원단제조부터 역내 공정 수행을 요구하는 이른바 원단기준(fabric-forward)을 도입하고 있다.

미국은 1만6천개 면화농가를 보호해야 하는 입장이고, 또한 글로벌 면화시장에서 미국은 기계화, 품질관리면에서 최고수준의 경쟁력을 갖고 있으므로 섬유의류의 대외 무역정책에서 미국산 면화 및 면사(cotton yarn) 생태계의 이해관계를 적극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자국 소비시장에 대한 접근기회를 파트너국에 제공하면서 미국산 면화, 면사 사용을 연계하는 역내 경제협력 창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할 수 있다.

EU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명품 패션브랜드와 고부가가치 의류브랜드들의 집결지로 패션브랜드들의 입장에서 FTA활용성을 생각한다면 실, 원단 등의 역내 생산과 무관한 봉제(sewing)작업 등 1공정 수행으로 원산지를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으나, 섬유소재 생산기반 보호와 역내 생산강화를 위해 2공정(double transformation) 기준을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내수 패션시장 규모가 한 해 50조원에 달하는 세계 10위의 패션 시장을 가지고 있고, 실, 원단 등 국내 소재업계는 세계 10위(83억불) 수출실적을 갖고 있어 우리 섬유패션산업은 결코 사양산업도 아니고, 작은 규모도 아니다.



그림 의류의 생산과정과 원산지 기준

제품	(fiber)	(yarn)	(fabric)	(clothing)
공정	방직/방사 → 제직/편직 → 재단/봉제			
원산지 기준	yarn-forward -----> fabric-forward ----->			

원사기준(yarn-forward)이 원단기준(fabric-forward)에 비해 FTA 활용 자 입장에서는 까다롭고 귀찮은 규정임에는 틀림없으나, 이러한 불편이 역내 섬유패션 산업 생태계 측면에서는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원산지 기준의 엄격성이 섬유의류산업의 FTA활용 제약요건이라는 이유로 이러한 제약성을 완화시키는 것이 섬유패션업계 전체에 이익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난 10년간 우리 섬유의류 수출실적을 보더라도 가장 불편한 원산지 기준이 적용되는 한·미 FTA를 활용한 우리 업계의 미국향 수출은 소폭 증가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비교적 원산지 충족이 쉬운 중국, ASEAN向 수출은 감소세가 뚜렷한 상황은 의미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우리업계가 중소기업이 대부분이고 협력사간 실시간 정보공유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한국 섬유의류기업들은 빠른 커뮤니케이션과 납기준수, 높은 품질관리 능력을 바탕으로 기대 이상으로 FTA를 활용하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무한경쟁 중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섬유의류기업들의 FTA 수출활용률은 평균 이상인 것으로 이해되는 바, 한국섬유산업연합회는 안전하고 정확한 FTA 활용을 강조하고 있으며, 연 6회 이상 다양한 주제의 FTA 세미나와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다.(섬유패션 fta지원센터 홈페이지, www.ftatex.or.kr 참고)



섬유의류 FTA 수출 시, 우리기업들이 유의해야 될 점을 꼽는다면 무엇보다 내가 알고 있는 게 틀릴 수 있다는 점이다. 늘 내가 다뤄왔던 품목이라면 처음부터 품목코드를 오해하고 있다던가, 바이어쪽 수입관세율이나 원산지 기준을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다.

또한, 품목별 원산지 기준 외의 누적기준이나 최소허용기준에 대한 해석을 바이어나 거래처 의견을 토대로 오더를 진행하는 것도 리스크라고 할 수 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거나 이해가 충분히 되지 않는 상태에서 원산지 증빙서류나 C/O를 발급하지 말고, 섬유의류 품목에 대한 이해가 높은 전문 관세사를 통해 적어도 자신이 취급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완성품 단계까지 HS코드나 관세율, 원산지 기준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섬유의류기업 CEO들 또한 이러한 FTA 조건을 실무자 또는 거래관세사의 업무영역으로 놔둘 게 아니라 일련의 프로세스에 따른 관리체계 점검 등 관심을 갖어야 할 것이다.

FTA 수출은 이익을 향유하는 조건에 반드시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수출 사후 검증 과정에서 해당 건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이 적절한 기간 내에 설득력 있게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FTA마진을 당연히 바이어의 뜻이라고 생각하거나 바이어측 요구 때문에 원산지 충족 가능성을 확인하지 않거나 또는 원산지 충족이 불가한 조건을 계약서에 반영하는 실수로 원산지 검증과 사후 클레임 리스크에 노출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바이어나 심지어 수입국 세관원 또한 자국내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협정규정을 오해하거나 처리과정에서 실수할 수 있다. 따라서, FTA조건으로 수출된 적 없는 섬유의류 상품에 대해 세관검증이 발동되거나, 바이어의 인식부족으로 검증대응에 실



패할 만한 원인이 발생했다면 바이어와 세관원에게 수출자 또는 협력생산처의 명확한 의견을 전달해야 한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서는 원산지 검증 대응에 대해서도 섬유의류 전문 관세사와 같이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5. 시사점

무분별한 FTA 활용은 사후 검증 리스크와 국가간 통상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FTA 활용촉진과 함께 검증대응 사례와 실무자/CEO 등에 맞춤형 FTA 교육, 인증수출자 자격 취득 등 중소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배려가 필요하다.

미·중 무역갈등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이라는 전제 하에 우리 중소 섬유의류 기업들의 RCEP 활용을 지원하고, CPTPP 가입도 서두를 필요가 있다.

한-EU FTA를 기반으로 EU-Vietnam FTA를 통해 한국산 원단의 원산지 누적을 협용하는 현행 모델을 EU 파트너국과 확대하고, 진행 중인 FTA 및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원산지 협상에서 우리 섬유의류산업의 주력 수출분야인 원단제조 및 가공업(미들스트림)이 파트너국과 역내 분업관계가 작동된다면, 우리 수출시장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기체결 FTA 파트너국의 비관세장벽도 수출확대의 큰 애로로 작용하고 있다. 튀르키예, 인도네시아의 경우 중국산 섬유수입 급증이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무차별적인 섬유 세이프가드를 도입하고 있으며, 한-튀르키예 FTA로 수출된우리 원단이 수출액 만큼의 보증금예치를 요구하는 등 FTA 활용을 제약하는 무역장벽들이 도입되고 있다.

최근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섬유 공급망 전체에서 원료획득 단계부터 강제노동이 사용되지 않았음을 요구하는 공급망에 대한 상당한 주의(due diligence)의무가 확대되고 있다. 현재 미국시장은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UFLPA)에 따라 미 관세당국의 소명요구 시, 섬유의류제품의 공급망 정보를 30일 내에 제출해야 통관이 가능하며, 공급망 정보는 한-미 FTA 섬유 원산지 정보관리체계와 크게 다르지 않아 한-미 FTA 섬유의류 수출을 안정적으로 준비해온 기업들에게는 기회요인이 될 수도 있다.

글로벌 섬유패션시장은 인권과 강제노동 외에도 탄소배출과 전주기 친환경평가, 기업 지배구조 등 E.S.G. 요소들이 바이어와 수입국 정부에 의해 적극적으로 도입되는 초기단계에 진입했으며, 기존 FTA협정 활용능력과 함께 E.S.G 관리역량은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에 중요한 결정요인이 될 것이다.





FTA TRADE REPORT